

#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순자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183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17년 10월 30일  
발 의 자 : 이순자, 김경자(양천), 김영한,  
김혜련, 문형주, 박호근, 우미경,  
이신혜, 이윤희, 장우윤, 조규영,  
한명희 의원(12명)

## 1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 장학재단의 이사회 구성 시 특정 성(性)이 60%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

## 2. 주요골자

이사회 구성 시 특정 성(性)이 60%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함(안 제12조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이사회 구성 시 특정 성(性)이 60%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.

###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이사회 구성의 적용례)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이사회 구성원의 결원 또는 임기만료의 사유 등으로 새로이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2조(이사회)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,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. &lt;단서 신설&gt;</p> <p>② ~ ⑤ (생략)</p>	<p>제12조(이사회) ① ----- ----- ----- . <u>다만, 이사회 구성 시 특정 성(性)이 60%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.</u></p> <p>② ~ ⑤ (현행과 같음)</p>